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홍보실운영규정

제정 2005. 10. 1.

개정 2010. 8.30.

개정 2012. 9. 1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과학기술대학교홍보실(이하 "홍보실"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0. 8. 30, 2012. 9. 1)

제2조(조직 및 직무) ① 홍보실에 실장1인을 두며, 홍보실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홍보실에 하부조직으로 홍보팀을 둔다.
- ③ 홍보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.
- 1. 연간 홍보계획 수립
- 2.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배부
- 3. 대학 요람 및 홍보책자 발간
- 4. 대학 이미지 홍보
- 5. 홍보도우미 관리 운영
- 6. 홍보위원회 관련 업무

제2장 홍보위원회

- 제3조(홍보위원회 설치) 홍보실에 대학의 홍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보위원회(이하 "위원회")를 둔다.
- 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홍보실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위원은 대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며, 대학별 위원 비율은 공과대학 2, 정보통신대학 1, 에너지바이오대학 1, 조형대학 1, 인문사회대학 1, 기술경영융합대학 1로 한다. 단 전문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12. 9. 1)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제5조(위원장 등의 임무)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홍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- 2. U·I(University Identity) 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
 - 3. 대내·외 홍보에 관련된 사항
 - 4. 중요 홍보물 제작ㆍ제정 등에 관한 사항
 - 5. 뉴스레터 관련 사항
 - 6. 기타 대학 이미지 향상과 창조에 관한 사항
- 제7조(간사) 위원회에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홍보실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2. 9. 1)
- 제8조(회의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

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련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제정으로 기존의 홍보위원회운영규정은 폐지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교명변경에 따른 일괄개정)

부칙(제136호, 2012. 9. 1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